금융위원회	보도자료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11.13.(금) 조간 배포 2026.11.12.(목) 09:00

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과 정보를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.

- 「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」 개최 -

✓ 「디지털자산법(안)」을 통해 금융회사 수준의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예정

✓ 법제정 前이라도 현 단계에서 조치 가능한 '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대응 가이드라인' 마련

✓ 해킹사고 관련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입출금차단 비조치 의견

Ⅰ. 회의개요

금융위원회는 '26.11.12.(목) **신진창 부위원장** 주재로 「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」를 개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**침해사고 현황**과 **대응방안**을 점검하고 현 단계에서 **최고 수준**의 **보안 강화**를 위한 **조치사항**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. 오늘 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**지속 발생**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의 **침해사고**에 대해 **엄중한 위기의식**을 공유하고 **금융회사 수준**의 **안전성 확보의무**와 **침해사고 대응체계**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**구체적**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· **일시 / 장소 : '26.11.12.(목) 16:30** /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

· **참석** : [금융위] **신진창 부위원장**(주재), 디지털금융정책관 등
[금감원] 디지털·IT부원장보, 가상자산감독국장 등
[금보원] 디지털보안본부장, 사이버대응본부장
[사업자] (원화마켓) 두나무, 빗썸, 코인원, 디지털엑스, 스트리미
(코인마켓) 한국디지털거래소, 포블게이트, 해피블록, 가디언홀딩스
(보관업자) KODA, KDAC
[DAXA] 상임부회장

· **논의사항** : ①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
② 해킹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입출금 차단 비조치 의견
③ 가상자산사업자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보안성 점검 지원방안

신진창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업계의 연이은 정보유출과 침해사고 발생 현황을 지적하며, 일부 사업자들의 **보안**에 대한 **인식**은 가상자산시장의 성장과 업계에 대한 기대와 달리 **제도화 이전**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. 특히, 가상자산사업자는 **이용자**의 **자산**을 수탁하여 **보관**하고 **관리**한다는 점에서 **전통적**인 **금융회사**와 **동일한 수준**의 **보안체계**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보안에 대한 **인식**을 **근본적**으로 **전환**할 것을 촉구하였다.

또한,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**보안 규율**을 **지속적**으로 **강화**해 왔으며, 현재 준비 중인 「**디지털자산법(안)**」을 통해 **디지털자산업자**(現가상자산사업자)가 **금융회사**에 준하는 **IT 안전성 확보의무**와 **손해배상책임**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. 다만, **입법**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 제정 전이라도 **24시간 모니터링** 및 **보고체계** 구축, **콜드월렛 비중 상향**과 **준비금 적립** 등 현 단계에서 보안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**즉시 조치**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Ⅱ. 주요 논의사항

금일 회의에서는 ①최근 침해사고와 관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**보안 강화**를 위한 **비상 대응 수칙**, ②**해킹사고 의심**시 사업자의 **선제적**인 입출금차단 비조치 및 ③가상자산사업자의 **금융보안원 사원 가입** 및 **보안성 점검** 지원 방안에 대해 **논의**하였다.

< ① 가상자산사업자 보안사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>

최근 인공지능(AI)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등 **새로운 침해위협**의 **급속한 확산**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현 단계에서 조치할 수 있는 **침해사고 방지** 및 사고 발생시 **피해 최소화**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다.

첫째, **24시간** 일주일 **내내 거래**가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시장의 **특성**에 맞추어 **상시 모니터링·대응체계**를 갖추도록 하였다. 사업자는 **담당 인력** 등을 상시 배치하여 비정상적인 대규모 거래 등 **사고 발생**이 의심되는 경우 **필요한 통제 조치**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. 또한, 모니터링·대응

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동 체계가 **정상적**으로 **운영**될 수 있는 시간에만 **입출금**을 처리하며, 이를 이용자에게 **사전 안내**하고 **충분한 인력 배치**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입출금 요청을 **적시에 대응**하여야 한다.

둘째, 이용자 자산의 **콜드월렛*** **보관 비중**의 **최대화**와 **보험 보상한도** 및 **준비금 적립액**의 **확충**이다. **현재** 「가상자산업감독규정」상 사업자의 콜드월렛 **의무 보관비중**은 80%이나, **전체 사업자**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**95% 이상**으로 이를 **크게 상회**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럼에도 이용자 자산의 **안전한 보관**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**핫월렛**에 보관되어 있는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수량을 **거래지원**에 필요한 **최소한의 수량**으로 **유지**하고, **복수**의 핫월렛에 **분산**하여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또한, 해킹 등에 따라 **이용자 피해**가 발생할 경우, 이에 대한 **보상**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보험 보상한도** 및 **준비금 적립액**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
* 콜드월렛(cold wallet):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으로서 상대적으로 해킹 등에서 안전

마지막으로, 현재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**금융회사**에 적용되는 **IT 안전성 확보 의무** 이행과 **침해사고 대응**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**제시**하였다. 「디지털자산법(안)」은 디지털자산업자(現 가상자산사업자)도 **금융회사 수준**의 **안전성 기준**과 **손해배상책임**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며, 그 이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「**전자금융거래법」 적용 금융회사**에 준하는 **안전성 확보 의무** 등을 **수행**하도록 할 계획이다. 사업자들은 가상자산거래의 전자적 전송·처리를 위한 인력·시설 등 **정보기술** 및 **정보보호**에 관한 사항, 가상자산 거래의 **안전성 확보**에 필요한 **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** 등에 관한 **안전성 기준**을 마련하여야 하며,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해 **취약점**을 **분석·평가**하고 그 결과에 따라 **보완 조치**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또한, **침해사고**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비정상적 접근 시도 등 **침해 가능성**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**금융당국**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,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**사고 보고체계**를 갖추도록 하였다.

< ② 해킹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입출금 차단 비조치 의견 >

최근 **증가**하는 침해 위협에 대응하여 **이용자 피해 확산**을 **방지**하기 위해 **해킹사고**가 **의심**되는 경우, **일정 조건** 하에 사업자들의 **선제적인 입출금 차단**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현행 「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」은 **정당한 사유** 없이 사업자가 **입출금**을 **차단**할 수 **없도록** 하고, **해킹사고** 발생이 **명백**한 경우에만 차단을 **허용**하고 있다. 이에 이상거래 발생 등 **해킹**이 **의심**되는 단계에서도 사업자의 **선제적인 입출금차단**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**불명확**하다는 업계의 **의견**이 있었다. 이에, 바이낸스 해킹 등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상자산 보안사고의 특성상 **신속한 차단조치**가 **이용자 피해 최소화**에 결정적인 바, 사업자들이 해킹, 침해사고가 **의심**되는 경우, **선제적**으로 입출금차단 **조치**를 취할 수 있도록 **'비조치 의견서'**를 **발급**하기로 하였다.

< ③ 가상자산사업자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및 보안성 점검 지원 >

현재 **이용자 규모**, **회비 부담** 등으로 인해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**5개 원화마켓 거래소**만 금융보안원 **사원 가입**을 완료한 상태이다. 그러나 **중소** 가상자산거래소의 **침해사고 발생 현황**을 고려할 때,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금융보안원에 **사원**으로 **가입**하고, **금융회사와 동일**한 수준의 **보안지원 서비스**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. 따라서,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보안원 **추가 사원 가입**을 추진하고, **사원 가입** 사업자에 대해서는 침해 위협 정보공유, 보안 취약점 점검, 금융보안 전문교육 등 **보안 서비스**를 **제공**할 예정이다. 가입이 **어려운** 경우에는 **중소금융사 수준**으로 취약요인 탐색, 경보체계, 보안조치 등을 **지원**한다.

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**취약점 분석·평가**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, 「특정금융정보법」상 ISMS 인증 외에는 별도 **점검 의무**가 없어, **외부 보안 전문기관**의 **종합 점검**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. 이에,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사업자 **사원기관**을 대상으로 **보안 점검**을 수행하고, 직접

점검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**자체적**으로 또는 **정보보호전문업체**를 통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'**가상자산거래소 특화 보안 점검 기준**'을 제공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**최신 침해 위협**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 검증 강화, 월렛 접근 통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**보안 점검 기준***을 연내 **개선**할 예정이다.

* 업무환경(클라우드 위주 운영, 핫월렛 탈취 위협 등)이 금융회사와 다른 점을 고려하여 ▲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, ▲블록체인, ▲월렛, ▲스마트 컨트랙트 분야 등을 별도로 마련

Ⅲ. 향후 계획

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업계의 **보안 쇄신 노력**을 **빈틈없이 지원**하는 한편, 가상자산업권에 **안전한 보안체계**가 **확립**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.

※ [별첨]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	책임자	과 장	서나윤	(02-2100-16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빈	(02-2100-1657)
담당 부서 <공동>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준	(02-2100-2573)
	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	책임자	과 장	안남기	(02-2100-17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세화	(02-2100-1713)
	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	책임자	국 장	최강석	(02-3145-8160)
		담당자	팀 장	이주영	(02-3145-8162)
	금융보안원 디지털보안본부	책임자	실 장	허세경	(02-3495-9650)
		담당자	팀 장	김진욱	(02-3495-9660)
	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	책임자	부 장	김기철	(02-3495-9400)
		담당자	팀 장	장운영	(02-3495-942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